

IV-5 사망

1. 사망신고

외국인이 일본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도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일본법률에 따라 시구정촌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. 사망의 사실을 인지한 후 7일안에 신고해야 합니다. 일본에서의 사망확인은 매우 명확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일본의 의사면허를 가진 의사 혹은 감찰의 이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.

의사에 의한 사망확인 후 의사가 작성하는 사망진단서를 받아 그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망지 혹은 신고인이 거주하는 시구정촌 담당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.

재류카드를 사망한 후 14 일 이내에 직접 출입국재류관리국에 반납하거나 동경출입국재류관리국 (*)으로 우송합니다. 또 사망한 분의 본국에서의 수속을 진행합니다. 나라에 따라 수속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재일대사관이나 영사관(부록IX-5)에서 확인하여 주십시오.

(*) 반납우송처 135-0064 도쿄도 고우도우구 오우메 2-7-11 도쿄항만합동청사 9층
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 오다이바분실

2. 매장

인구가 밀집한 오사카부에서는 토장을 허가해주는 묘지는 거의 없습니다. 종교나 관습상 화장이 아니라 토장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묘지를 찾거나 본국으로의 유해이송이 필요할 경우에는 영사관 등 (부록IX-5)에 상담해 주십시오.